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